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『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』에 따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의무 조항 중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, 위탁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수탁자의 의무 조항 중 시설물 훼손 시 “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”를 “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”로 개정(안 제10조제4항)

○ 위탁해지 조항 중 “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”를 “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”로 개정(안 제12조제1항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.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입법예고 : 2015. 10. 22 ~ 2015. 11. 11(의견없음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271-9번지 안에”를 “271-9에”로 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군민”을 “성주군민”으로,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제5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”로 한다.
제10조제4항 중 “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”을 “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”으로 한다.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3호 중 “위탁조건”을 “위·수탁 협약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군수가”를 “공익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에”를 “성주군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복지관의 명칭은 "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"이라 하며, 복지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-9번지 안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----- 271-9에 ----------.
제3조(사업)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3조(사업) ---------- 다음 각 호의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 및 제한) 복지관의 시설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우선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	제4조(이용 및 제한) ---------- 성주군민 ---------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--------. 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) ①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	제5조(운영) ① 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----------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	④---------- -------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탁해지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	제12조(위탁해지) ① 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	3. ---------- 위・수탁 협약사항---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	4. 공익상 ----------
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, 비품일체는 군에 귀속한다.	② ---------- 성주군에 -------.